

워싱턴 DC 정부
시장사무국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

2016 회계연도 신청서 접수 요청 (RFA):
개인용 보안 카메라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요 공지 사항

전자 승인 신청 관리 시스템
(eGMS) ZoomGrants™

신청서에 접속하려면 링크 <http://www.ovsig.dc.gov> 를
클릭하십시오

I. 일반 정보

서론

시장 사무국의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OVSJG)에서는 폭력범, 공중 안전 및 사범 제도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정책을 위해 연방 및 워싱턴 DC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VSJG는 개인용 보안 카메라 인센티브 프로그램 (Private Security Camera Incentive Program)에 의거, 자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소유자, 사업장 소유자, 비영리 및 종교 단체가 범죄 방지 및 경찰 수사 협조를 목적으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카메라의 구매와 설치 비용 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 요건

제출 요건

신청인은 카메라당 최대 \$200, 주거지 주소당 최대 \$500, 그리고 거주 목적 이외의 모든 건물 주소당 최대 \$750을 카메라 환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이후 그리고 자금 소진 이전에 카메라를 구매 및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카메라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건물 주소당 1개의 카메라 시스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개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금 가용성

이 프로그램을 통한 환급 자금은 **2016년 2월 2일부터** 모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됩니다. 모든 환급금 지불은 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이전 및 프로젝트가 만료 이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는 사전 통보 없이, RFA에 등재된 본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취소하거나, 모든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운용 가능 자금을 조정하거나, RFA 자체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는 워싱턴 DC의 자금 조달 상황에 의거, 결정됩니다.

우선 고려 대상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는 다음 경찰 서비스 지역 (Police Service Area, PSA) 내 건물, 사업장 및 종교 시설을 우선순위로 고려합니다:

- PSA 103
- PSA 104
- PSA 105
- PSA 107
- PSA 108
- PSA 202
- PSA 207
- PSA 208
- PSA 302
- PSA 303
- PSA 305
- PSA 307
- PSA 308
- PSA 402
- PSA 403
- PSA 404
- PSA 405
- PSA 406
- PSA 407
- PSA 409
- 제 5 경찰구역 내 모든 PSA
- PSA 601
- PSA 602
- PSA 603
- PSA 604
- PSA 607
- PSA 608
- 제 7 경찰 구역 내 모든 PSA

PSA 경계는 온라인 사이트 <http://mpdc.dc.gov/page/police-districts-and-police-service-area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건물 주소에 해당하는 PSA 를 온라인 사이트 <http://geospatial.dcgis.dc.gov/PSAFinde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정보

온라인 신청은 동 자금 소진 이전에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www.ovsjg.dc.gov 에서 제공됩니다. 수기 작성된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 전까지 ZoomGrants™를 통한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간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무효로** 간주하여 환급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환급 자격 통보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는 모든 신청인에게 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최종 환급 자격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환급금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4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 받는 모든 신청인의 경우, 이 통지서에는 환급 예정 금액과 환급 신청 금액보다 지급 금액이 적을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의 제기 절차

환급이 거부된 신청인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여 거부 사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of Victim Services and Justice Grants

ATTN: Application Inquiry – Private Security Camera Incentive Program

441 4th Street, NW, Suite 727N

Washington, DC 20001

이메일: security.cameras@dc.gov

지급 조항

워싱턴 DC 정부는 이 RFA 결과에 의한 환급 동의서 약관에 의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 지급일 이전 및 지급일 후 삼(3) 년 동안 언제라도 워싱턴 DC 정부는 신청서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OVSJG 는 RFA 를 위한 신청서 준비 과정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준비 과정 중 발생한 비용은 모두 신청인 자신의 책임임에 동의합니다.

OVSJG 는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 검증을 위해 환급 자격을 통보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RFA 약관과 연방 또는 워싱턴 DC 의 법률이나 규정간 이해 상충이 있거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이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신청인 책임입니다.

검토 절차 및 환급 자격 결정

신청인의 자격 요건 구비 여부,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여부, 그리고 필요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신청서의 서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상기 요건들이 모두 확인되면 OVSJG는 필요할 경우 검증 목적의 현장 방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연락합니다.

카메라 설치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동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해당 지역 법률과 규정에 의거 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II. 신청 안내

신청인 프로필

모든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공식 관리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관리자는 신청인의 대리로 서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 건물 소유주**인 경우, 공식 관리자는 그 건물의 법적 소유주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사업장 소유주, 비영리 단체 또는 종교 기관**인 경우, 공식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종교 기관의 대리로 서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장 소유주, 또는 종교 기관이 개인용 보안 카메라가 설치될 건물의 법적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사업장 또는 종교 단체는 개인용 보안 카메라 설치 예정 주소지의 법적 건물 소유주가 작성한,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사업장 또는 종교 단체의 개인용 보안 카메라 설치 허가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안 카메라 구매 및 영수증 확인

모든 신청인은 카메라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매 증빙 서류의 예로는 구매 영수증, 발송 영수증 및/또는 배달 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구매된 보안 카메라만 이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보안 카메라 설치 확인

보안 카메라의 환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 방법으로 설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안 시스템 설치를 업무로 하는 유효 기본사업면허 (Basic Business License) 보유 회사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동 회사가 사진을 증거로 포함하여 건물에 대한 카메라 설치를 인증하거나, 2) 건물 소유주, 사업장 소유주 또는 유효한 기본사업면허가 없는 사람이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신청인은 사무소에 통보하여 보안 카메라 시스템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등록 확인

모든 신청인은 온라인 사이트 <http://mpdc.dc.gov/securitycameraregistration>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보안 카메라를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서 제출 이전에 보안 카메라를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의 승인 (해당될 경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될 주소의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예: 임차인), 신청인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동 주소지에 대한 보안 카메라의 설치 허가 확인서를 확보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신청 확인 목록

다음은 동 RFA 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며, 마감일 이전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프로필
- ☐ 카메라 구매 영수증
- ☐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등록 확인서
- ☐ 건물 소유주의 확인서 (해당될 경우)
- ☐ 설치 증명서